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#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▣ 이정수 의원 외 13명 발의(의안번호 제84호)

2026. 10.

**행정문화복지위원회**
**전 문 위 원**

# 〈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〉
# 검 토 보 고 서

## Ⅰ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84호

○ 발 의 자 : 이정수 의원 외13명

○ 발의일자 : 2026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## 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1. 제안이유

○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인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 이하에서 서산시는 하위 50퍼센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, 간병이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및 제4조)

나.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및 제6조)

다. 간병비 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간병인의 자격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역보건법」

「지방자치법」

「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## Ⅲ. 검토의견

### 1. 제정목적

○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이 필요한 시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법적 근거

-「지역보건법」제3조에서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「지방자치법」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도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다목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자치사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

-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

《지역보건법》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《지방자치법》

제13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3. 조문별 검토

### 가. (안 제1조) 목적

- 본 조항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조례의 목적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음

**나. (안 제2조) 정의**

- ‘보호자 없는 병원사업’을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

**다. (안 제3조) 사업계획 수립·시행**

- 시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절차 및 세부추진계획, 지정의료기관, 간병인 근무형태·인원 및 인건비 지급기준, 행정·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

**라. (안 제4조) 지원대상**

- 의료급여수급권자, 행려환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자, 긴급지원대상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등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
- 충청남도 조례는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하위 5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시비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임
-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정할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

**마. (안 제5조)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**

- 공공보건의료기관,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, 응급의료기관 및 병

원급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2항에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함

**바. (안 제6조)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**

-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소홀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, 폐업·휴업 등으로 사업운영이 곤란한 경우, 사업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**사. (안 제7조) 예산 지원**

- 시장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, 지원방법 및 절차는「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간병비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성한 것으로 판단됨

**아. (안 제8조)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**

- 간병서비스의 내용을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과 안전관리, 운동 및 활동 보조,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
- 2항으로 인해 서산시 자체사업의 지원기간이 충청남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
- 3항에서 도비보조사업과 시비사업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동일한 간병서비스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5, 6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간병인 관리·감독책임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조치 및 시장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사업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
**자. (안 제9조) 간병인의 자격**

- 간병인의 자격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간병교육 수료자로 규정하고 있음
- 충청남도 조례의 자격기준과 동일하여 상위 조례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있으며,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**차. (안 제10조) 지도·감독**

- 시장이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간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

**카. (안 제11조) 관계 기관 등의 협조**

- 시장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**【참고자료 1: 충남 및 도내 타 시·군 관련 입법 현황】**

| 지역명 | 법 령 명 | 제·개정 | 실행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충청남도 | 충청남도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에관한조례 | 개 정 | 2023.08.10. |
| 공 주 시 | 공주시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조례 | 제 정 | 2026.04.15. |
| 당 진 시 | 당진시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조례 | 개 정 | 2025.06.30. |
| 논 산 시 | 논산시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조례 | 제 정 | 2024.09.10. |
| 태 안 군 | 태안군보호자없는병실운영에관한조례 | 개 정 | 2023.02.28. |

## 【참고자료 2: 충남 도내 타·시군 유사 사례】

| 구 분 | 유 사 사 례 |
|---|---|
| 공 주 시 | · 대 상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, 긴급복지지원대상자<br>**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% 이하자(확대)**<br>**- 2026. 4.월 조례 제정 및 시행**<br>· 이용자수: 350명(도비사업 포함)<br>· 지원일수: 1인 30일(의사 소견서 첨부시 최대 45일까지)<br>· 병 상 수: 2실 10병상 (1개소 시행 의료기관)<br>· 예 산: 2억 4천 7백만원(도비 4,400만원) / **시비추가: 100백만원** |
| 당 진 시 | · 대 상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, 긴급복지지원대상자,<br>**건강보험료 하위 40% 이하자(확대)**<br>**- 2025. 6. 조례 개정 및 시행**<br>· 지원내용: 1인 30일(의사 소견서 첨부시 최대 45일까지)·<br>· 이용자수: 연평균 약 200~250여명<br>· 예 산: 2억 3천 3백만원(도비 6,600만원) / **시비추가: 13,000천원** |

【참고자료 3: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현황(실인원기준)】

(단위 : 명)

| 구 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.08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246 | 177 | 252 | 223 | 241 | 257 |
| 의료급여수급권자 | 191 | 155 | 213 | 196 | 184 | 209 |
|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| 8 | 17 | 14 | 14 | 17 | 18 |
| 건강보험료(하위20%) | 42 | 5 | 25 | 12 | 35 | 30 |
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| 5 | 0 | 0 | 1 | 2 | 0 |
| 행려환자 | 0 | 0 | 0 | 0 | 3 | 0 |

*「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도비30%, 시비70% 매칭 사업 현황임*

## 5. 종합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임

나. 충청남도 조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%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**하위 21% ~50%**까지 확대하여 서산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
다.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(당진, 공주는 건보료 **하위 21% ~ 40%**까지 지원)【참고자료 1, 2】

라.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